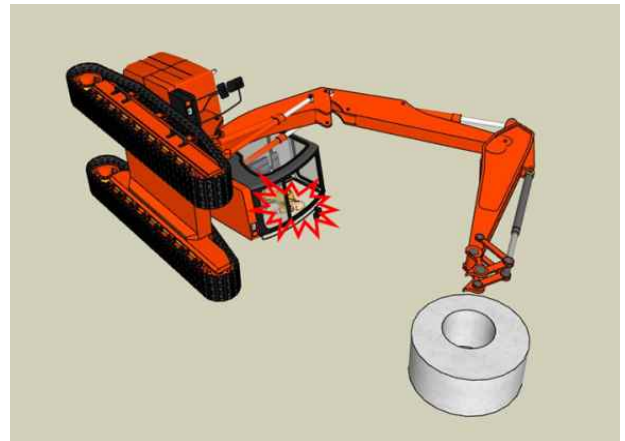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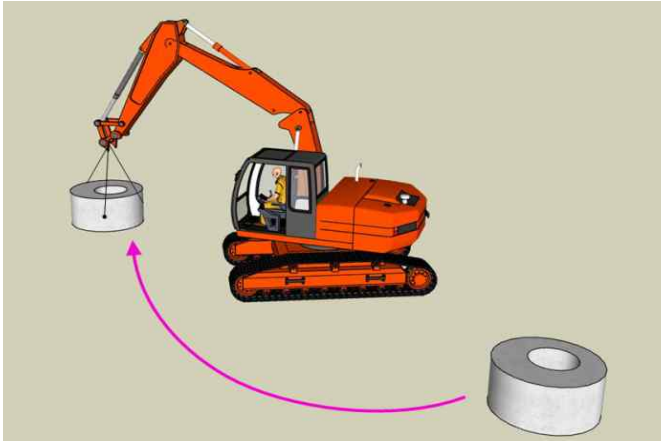




재해개요

- 2022. 02. 26.(수) 09:05경, 광주광역시 □□구 소재 ○○○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오수맨홀 설치 작업을 위하여 굴착기로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한 채로 선회하던 중 굴착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, 운전석 출입문 쪽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(굴착기) 사용 작업 시 전도 등의 방지 미실시**
 - 지반의 침하 및 단부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성토된 지반에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다 굴착기가 전도되어 재해가 발생함
- 차량계 건설기계(굴착기) 작업계획서 미작성**
 - 굴착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맨홀 상부구체를 운반하는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파악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재해가 발생함
- 굴착기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관리감독 소홀**
 -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여부 및 운전실 출입문 개방상태 등의 안전조치를 관리·감독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함



재해예방 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전도 등의 방지 실시**
 - 차량계 건설기계(굴착기)를 사용하여 작업 시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의 침하 및 단부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하고,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**
 - 차량계 건설기계(굴착기) 사용 작업에 대한 장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
- 안전띠 착용 및 운전실 출입문 개방 여부 관리감독 철저(권고)**
 -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실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 작업 전 운전자 안전띠 착용여부 및 출입문 개방상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